

## 인장관리 규정

(제7차 개정 2009. 11. 13.)

제1조(적용 및 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 12. 29.)

제2조(구분) 인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한다.

1. 중앙본부는 연맹인, 총재 직인, 사무총장 직인, 법인대표 인감, 연맹 압인 및 연맹 계인
2. 지방·특수연맹은 지방·특수연맹인, 연맹장 직인, 지방대표 인감, 사무처장 직인, 지방·특수연맹 압인 및 지방·특수연맹 계인 (개정 09. 11. 13.)
3. 지구연합회(지역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는 회장 직인, 사무국장 직인 및 지구연합회 계인
4. 중앙훈련원은 중앙훈련원인, 중앙훈련원장 직인, 중앙훈련원 계인 (신설 93. 2. 26.)

제3조(자체) 인장은 한글 전서체(□□□)로서 가로 새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인형 및 규격) ① 연맹인의 인형(□□)은 정4각형으로 하고 당해 연맹명을 새기되, 그 규격은 별표 1호와 같다.

② 직인의 인형은 전항에 의한 직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별표 1호와 같다.

제5조(등록) 중앙본부 및 지방·특수연맹 인장은 중앙본부에 비치된 별표 2호의 인장대장 서식에 인형을 찍어 등록하고, 지구연합회의 인장은 지방·특수연맹에 등록한 후에 사용한다. (개정 09. 11. 13.)

제6조(인장의 사용) 인장을 사용코자 할 때는 별표 3호 서식의 사용 기록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한 연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의 책임) 인장의 보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본부는 주관팀장
2. 지방·특수연맹은 사무처장 (개정 09. 11. 13.)
3. 지구연합회는 사무국장
4. 중앙훈련원은 훈련운영팀장 (개정 09. 2. 12.)

제8조(개인 및 폐기)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인장관리 규정)

그 사유를 들어 본 규정 제6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날인 방법) 인장의 날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설 93. 2. 26.)

1. 연맹인 및 훈련원인은 중앙 또는 연맹명의 끝자 부위에 날인한다.
2. 직인은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3. 계인(□□)은 문서의 상부 한계선으로부터 3cm 이내의 곳에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연맹인, 훈련원인 또는 직인을 여러 장으로 된 문서의 간인으로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우측 하단선 중앙에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인(□)은 일반 관례(□□)에 의하여 날인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3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